



대한민국법원 QR코드

부 산 지 방 법 원

제 3 - 3 형 사 부

등본입니다.

2026. 4. 25.

법원사무관 권영상



판 결

사 건 2025노417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컴
퓨터등장애업무방해(예비적 죄명 : 업무방해)

피 고 인 서성준 (610625-1 [REDACTED]), 착한택시대표
주거 부산 사하구 [REDACTED]
등록기준지 사천시 [REDACTED]

항 소 인 검사

검 사 김준소(기소), 조현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임대웅(국선)

원 심 판 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5. 10. 14. 선고 2025고단52 판결

판 결 선 고 2026. 4. 24.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제작한 '착한매크로', '하이클래스' 어플리케이션(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어플'이라 한다)은 이 사건 어플을 사용하는 택시기사들로 하여금 특정 조건의 콜 수락을 우선적으로 이행하도록 하였다. 이 사건 어플은 피해자 회사의 AI기반 배차 시스템에 잘못된 학습을 유도하여 '카카오 T' 서비스의 적정한 운용을 방해하는 것이므로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고 '카카오 T' 서비스 운영시스템의 정보처리에 직·간접적인 장애를 현실적으로 초래하는 것에도 해당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공소장변경에 따른 심판대상의 추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업무방해', 적용법조를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로 하여 별지 기재와 같은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이러한 예비적 공소사실의 추가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하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주위적 공소사실)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어플이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 회사의 정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처리에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하게 살펴보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더하여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1) 이 사건 어플은 그 기술적 구성에 비추어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작동 방식(고객호출→기사들에게 콜 카드 배분→콜 수락→배정)의 운용에 개입하지 않는다. 단지 배분된 콜 카드의 내용을 읽고 미리 설정해 둔 선호거리인 경우 블루투스로 연결된 집게 모양의 외부 연결장치를 통해 전류를 흐르게 하여 '수락'버튼을 터치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낸다. 눈으로 읽고 손으로 누르는 물리적인 행위를 대신하여 주는 것으로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보인다. 이 사건 어플을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운용을 방해하는 악성프로그램으로 보기 어렵다.

2)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어플이 AI기반 배차 시스템에 잘못된 학습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나, 구체적으로 위 어플로 인해 배차 시스템 학습이 어떻게 잘못된다는 것인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피해자 회사는 AI기반 배차 시스템에 따라 콜 카드를 배분하는데 이는 동시에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기는 하나 순차적으로 발송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어플을 설치한 택시기사라고 하여 항상 콜을 먼저 수락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사건 어플은 콜 수락 단계에서 작용하는 것으로 다른 택시기사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위 어플로 인해 콜 신호를 받지 못하였다거나 콜 수락이 불가능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이상 콜 배분의 공정성에 해를 입힐 개입을 하고 있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이 그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사용목적과 다른 기능을 하였다고 할 수 없는바, 피해자 회사의 정보처리의 장애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

3) 이 사건 어플의 설치 여부에 따라 택시기사들 사이에 사실상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고, 피해자 회사가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이용약관에서 이 사건 어플과 같은 프로그램에 대한 금지규정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이는 피해자 회사와 택시기사 간의 계약관계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이용약관에 따른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피해자 회사는 별도의 비용을 지불하면 사용할 수 있는 프로멤버십이나 카카오 T 블루의 서비스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고 있고 이 유료서비스에는 콜 배분에서 유리해질 수 있는 옵션이 제공되거나 자동 콜 수락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 택시기사들 사이의 형평성이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의 운용방해 여부나 정보처리 장애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라고 할 수도 없다.

4.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가. 예비적 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판단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도5117 판결 참조).

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9조의12 제1항에 의하면 플랫폼가맹사업자인 피해자 회사는 운송가맹점인 택시기사들에 대한 여객의 공정한 배정업무를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어플이 위 배정업무를 위계로써 방해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① 피해자 회사가 택시기사들에게 콜 카드를 보낼 때, 피해자 회사는 공정한 배차를 위하여 호출 요일, 출발지 및 목적지 정보, 택시기사의 출발지까지 예상 이동 거리 시간, 평균 배차 수락률, 평균 운행 완료 수, 택시기사 평점 등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순번 42번 관련자료 10면, 증거기록 3권 49면), ② 그런데 피해자 회사가 이러한 AI기반 배차 시스템에 따라 콜 배분을 하는 데에 있어 이 사건 어플이 어떠한 왜곡을 가져왔는지 밝혀지지 아니한 점, ③ 이 사건 어플은 배차 단계가 아닌 수락 단계에서 그 업무를 빠르게 수행하여 주는 것으로 보일 뿐인 점, ④ 콜 자동 확인·수락의 경우 이용약관에 의해 금지되고 있으나 이는 카카오 T 기사용 어플리케이션 가입자인 택시기사들이 부담하는 의무인 점, ⑤ 이 사건 어플이 콜을 가로채거나 타인의 콜 수신을 방해한다고 볼 자료가 없고 위 어플로 수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택시운행은 호출내용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 회사의 업무수행, 업무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되었다거나 방해될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원심이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항소를 제기한 다음 공소사실의 동일성 범위 내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였으나 원심의 결론과 동일한 경우에는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충분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

재판장	판사	이소민	<u>전자서명완료</u>
	판사	박민준	<u>전자서명완료</u>
	판사	이소연	<u>전자서명완료</u>

※ 문서 첫 장 우측 상단의 QR코드로 대한민국법원 앱에서 진위와 전자서명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고, 텍스트 음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전자소송포털 및 각급 법원 민원실에 설치된 사건검색 컴퓨터의 발급문서(번호)조회 메뉴에서 문서 좌측 하단의 발급번호를 이용하여 위,변조 여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